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62
----------	------

제안연월일 : 2014. 5. 2.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설치한 교육위원회를 동 법률 제10046호('10. 2. 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 나.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정수 5명이 감소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각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 조정과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화('13. 1. 18.)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5185호, '13. 1. 4.) 부칙으로 인천대학교 관계공무원 출석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 나. 의회에는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산업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5조)

- 다. 금년 2월 24일자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통합(5월 2일자로 안전행정국 소속 대회총괄과로 개편)된 국제경기지원관실 사무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4월 21일자로 설치된 규제 개혁추진단 사무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함(안 제26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 라. 산업위원회로 편중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마. 교육의원제도가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改選) 또는 보임(補任)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28조)
- 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관행적으로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 사. 개정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6쪽)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별첨(13쪽)
-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제25조 제목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로 하고, 본문 각 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26조 제목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카.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타.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제목 “(상임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8.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9. <u>제5호</u>의 교육기관 및 <u>제6호</u>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p>② (생략)</p>	<p>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u>제6호</u>-----<u>제7호</u>----- ----- ----- ----- 10.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 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4. 산업위원회 8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8명 이내 6. 교육위원회 9명 이내 	<p>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2. 기획행정위원회</p> <p>가. <u>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나. <u>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라. <u>(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2. 기획행정위원회</p> <p>가. <u>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나. <u>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라. <u>(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마. <u>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바. <u>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3. 문화복지위원회</p> <p>가. <u>국제경기지원관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나. <u>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3. 문화복지위원회</p> <p>가. <u>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나. <u>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현행	개정안
<p>라.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마.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바.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사. (재)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아.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4. 산업위원회</p> <p>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다.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4. 산업경제위원회</p> <p>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p>

현행	개정안
<p>바. <u>(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사. <u>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아. <u>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바. <u>(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사. <u>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아. <u>(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자. <u>(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차. <u>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카. <u>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타. <u>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5. 건설교통위원회</p> <p>가. <u>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나. <u>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라. <u>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u></p>	<p>5. 건설교통위원회</p> <p>가. <u>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나. <u>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다. <u>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p> <p>라. <u>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6. 교육위원회</p> <p>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제2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p> <p>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6. 교육위원회</p> <p>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p> <p>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p> <p><u>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한다. 이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u>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u></p> <p><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제58조(위원회의 권한) ○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제52조(운영 규정)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 ○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 제10조의3(교육위원의 퇴직)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항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인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꺾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6조(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 ①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교육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의3(교육위원의 퇴직) 교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위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